

현장의 유식비량에 대한 원효의 반론의 논리적 타당성 검토

— 원효의 『판비량론』을 중심으로 —

장 민 석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본고는 원효의 『판비량론』 중 타인의 문헌에 단편적으로 인용된 구절들, 즉 소위 산일부¹⁾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 현장의 유식비량에 대한 원효의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의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논리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1. 진나가 체계화한 불교의 신인명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도 불교의 논리학 체계의 요체와 성격을 이해한다. 원효의 『판비량론』 역시 신인명학적 논증 체계를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현대 논리학적 관점에서 진나 논리학의 오류를 제거한 버전을 제시한다. 연후에 김성철²⁾과 김상일³⁾의 2차 문헌을 바탕으로 진나 논리학의 원래 버전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밝힌다. 최종적으로 진나 논리학이 ‘오류’를 내포하게 된 이유를 불교철학과 관련하여 고찰하겠다.
2. 현장의 유식비량을 분석한다.
3. 원효의 유식비량 비판 논리를 분석한다.⁴⁾ (상위결정의 논증식)

-
- 1) 『판비량론』 산일부는 유식비량에 대한 비판과, 현장이 개량한 승군비량에 대한 원효의 비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분류되나 본고에서는 전자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 2) 김성철, 『원효의 판비량론 기초 연구』, 지식산업사, 2003.
 - 3) 김상일,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로 풀어본 원효의 판비량론』, 지식산업사, 2003.
 - 4) 규기는 순경으로부터 이 비판 논리(비량)를 전해들었으나, 원래 그것은 원

4. 원효의 비판에 대한 규기의 비판을 검토한다.
5. 김성철의 규기 비판에 및 원효 옹호 논리를 검토한다.
6. 원효의 유식비량 비판 논리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I. 진나 인명학의 논증 체계

1. 인명학과 비량

인명학이란 무엇인가? 『인명학이란 ‘불교적 인식론과 논리학’ 또는 ‘불교인식논리학’이라고 풀이할 수 있으며, 이는 진나(Dignāga, 480~540년경)에 이르러 집대성되었다. 진나는 6세기 초 인도 사상계에 유포되어 있던 불교 내외의 인식논리학 이론들을 수집한 뒤 이를 ‘연기’와 ‘공’ 그리고 ‘무아’라는 불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재조직함으로써, ‘불교적 인식논리학’, 즉 인명학을 창출해내었다. 예부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삼아 진나 이전의 인식논리학을 고인명, 진나를 포함하여 그 이후의 인식논리학을 신인명이라고 부른다.』라고 김성철은 말한다.⁵⁾

비량이란 무엇인가? 비량이란 현대어로 풀이하자면 ‘논증식’이다. 『불교의 ‘양’이란 해탈에 이르는 지식의 수단(means of knowledge)을 말한다.』⁶⁾ 정리파의 양론에 따르면 양은 8가지로 구분되는데, 후대에 와서 4가지로 정리된다. 현량, 비량, 성교량, 비유량이 그것이다. 현량은 『오관이 대상과 직접 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개념화되지 않는 지식』⁷⁾, 즉 감각적 직관지에 가까운 개념이다. 비량은 『현량을 기초로 하여 비교와 추리를 더한 것』⁸⁾, 즉 논리적 추론(논증)에

효가 고안한 비량이었다. (김성철, 『원효의 관비량론 기초 연구』, 369~370p 참조)

5) 같은 책, 18p.

6) 김상일,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로 풀어본 원효의 관비량론』, 56p.

7) 같은 책, 57p.

8) 같은 책, 57p.

의해 얻어진 지식이다. 성교량은 「성인이나 그 학설의 권위자 혹은 지식인의 주장과 교설을 비판 없이 받아들여 인식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⁹⁾ 마지막으로 비유량은 「어떤 사물을 설명할 경우 명사에 대한 지식으로 그 실용을 인지하는 작용을 말한다.」¹⁰⁾ 대부분의 불교학파와 승론파는 현량과 비량만을 인정하는 이량설을 택한다. 반면 진나는 비량만을 인정하는 일량설을 택한다.

그러나 진나가 현량을 무의미한 것으로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분별 이전의, 혹은 분별을 넘어선 것으로 본 것 같다. 김상일에 의하면, 진나는 해탈로 나아가는 인식의 과정을 ‘전(前)합리적 인식 → 합리적 인식 → 초(超)합리적 인식’의 삼 단계로 보았다.¹¹⁾ 양론의 용어로 다시 쓰자면, ‘현량 → 비량 → 현량’²⁾가 된다. 여기서 현량이란 추론 이전의 단순한 감각지를 말하며, 현량₂란 언어를 넘어선 해탈에 이른 상태에서의 절대지를 말한다.

요컨대 비량은 해탈로 나아가는 인식 과정 상에서 두 직관지를 언어를 도구로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수단이다. 진나는 비량의 형식이 지켜야할 합리적 규칙을 제시하는데, 이것이 삼지작법이다.

2. 진나 인명학의 삼지작법과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삼단논법

진나는 비량을 자기자신의 지식을 인식하는 방식인 자비량과, 자비량을 통해 얻은 지식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인 타비량으로 구분한다.¹²⁾ 타비량이 따르는 논증 형식이 논식인데, 진나는 이러한 논식으로서 삼지작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삼지작법의 예를 하나 살펴보자. 여기서는 김성철의 예를 따르겠다.¹³⁾

9) 같은 책, 57p.
 10) 같은 책, 58p.
 11) 같은 책, 58p.
 12) 같은 책, 82p.
 13) 김성철, 『원효의 판비량론 기초 연구』, 81p.

종(宗): 저 산에 불이 있다.

인(因): (저 산에) 연기가 있기 때문에.

유(喻): 마치 아궁이와 같이. (연기가 있는 곳엔 불이 있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진나의 삼지작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법과 매우 유사하다. 김성철은 삼단논법과 삼지작법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여기는 것 같다. 그는 다음의 삼단논법을 들어 삼지작법의 각 요소들과 삼단논법의 각 요소들 사이의 대응관계를 보여준다.

대전제: 연기가 있는 곳엔 불이 있다. ¹⁴⁾	→ ‘유’에 대응
소전제: 저 산에 연기가 있다.	→ ‘인’에 대응
결론: 저 산에 불이 있다.	→ ‘종’에 대응

삼지작법과 삼단논법의 유일한 차이는 대전제를 제시하는 방식에 있다. 삼단논법에서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연기가 나는 곳에는 불이 있다’ 와 같이 사태에 대한 일반적 진술을 대전제로 삼는다. 반면, 우리가 삼지작법을 삼단논법의 한 변양태로 보는 한에서, 삼지작법은 대전제의 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사태에 대한 일반적 진술(법칙)을 암시하는 어법을 택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인도 인명학에서는 왜 일반적 법칙(대전제)이 아닌 일반적 법칙의 사례(유)를 제시하는 방법을 택했을까? 논증의 건전성과 타당성을 혼동하였기에 논증체계가 정교하게 형식화되지 못한 것일까? 혹은 대전제 또한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여겨 귀납과 연역을 한 데 섞은 논증방식을 고안한 것이라 볼 수 있을까? 위 질문들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명학이 굳이 법칙이 아닌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을 단지 고대인의 지적 순진성 탓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이 사실은 불교의 ‘空’ 사상과 ‘연기’ 사상 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1-5. 진나

14) 「‘모든’ 연기가 있는 곳엔 불이 있다.」라는 정언 명제로 대전제를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인명학의 성격 규정' 절에서 보다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여기서는 삼지작법을 삼단논법에 대응시키는, 삼지작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잠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삼지작법의 논리적 타당성을 보다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자.

진나는 유를 유체와 유의로 나누었으며, 동시에 동유와 이유로 나누었다. 동유/이유의 구분은 사례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였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유체/유의의 구분은 삼지작법의 논리적 타당성을 형식적으로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진나의 업적이라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삼단논법의 대전제와 마찬가지로, 유체는 개별 사태들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법칙을 언표하기 때문이다.

예를 통해 유체/유의, 동유/이유의 구분 논리를 살펴보도록 하자.¹⁵⁾

종: 소리는 무상하다.

인: (소리는) 소작성(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동유	{	유체: 모든 소작성된 것은 무상하다.
		유의: 예를 들면 항아리와 같이.
이유	{	유체: 모든 상주하는 것은 비소작성이다.
		유의: 예를 들자면 허공과 같이.

위의 예에서 보듯이 동유와 이유는 서로 대우 관계에 있다. 즉, 현대 양화논리학의 어법으로 위의 예를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¹⁶⁾

15) 김상일,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로 풀어본 원효의 판비량론』, 85p에 제시된 사례.

16) 『기호논리학』(벤슨 메이즈, 김영정, 선우환 역, 문예출판사, 1995)에 제시된 notation을 따랐다. 세부 증명과정은 생략하였음을 밝힌다.

P: 소작된 것이다 V: 무상하다 s: 소리 (x는 변항)

(1)	$(\forall x) (Px \rightarrow Vx)$ Ps $\therefore Vs$ 동유 인 종
(2)	$(\forall x) (-Vx \rightarrow -Px)$ Ps $\therefore Vs$ 이유 인 종

따라서 진나는 Modus Ponens ((1)의 경우)와 Modus Tolens((2)의 경우)에 대한 논리적 직관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인의 삼상과 구구인

아리스토텔레스가 256개의 정언 삼단논법 형식 중 타당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듯이, 진나 또한 타당한 삼지작법을 골라내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구구인이 바로 그것이다. 고인명에서 진나 인명학으로 전승된 ‘인의 삼상’을 충족하는 삼지작법 패턴을 찾아내는 틀이 구구인이다. 인의 삼상이란 올바른 인이 지녀야 할 세 가지 성질이다. 17)

- (1) 변시종법성: 종의 주어는 인의 술어를 속성으로 지닌다.
- (2) 동품정유성: 종의 술어를 속성으로 지니는 것(동품) 중 인의 술어를 속성으로 지니는 것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다.
- (3) 이품변무성: 종의 술어를 속성으로 지니지 않는 것(이품) 중 인의 술어를 속성으로 지니는 것은 전혀 없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삼지작법을 하나 살펴보자.

17) 김성철과 김상일의 표현은 혼란스럽고, 명쾌하지 못하고 또한 병통이 있어, 나름의 언어로 인의 삼상을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I-3절에서 설명하는 인의 삼상과 구구인은 진나 인명학에 내재한 논리적 오류를 제거한 버전이다.

종: 소크라테스는 필멸한다.

인: 살아있으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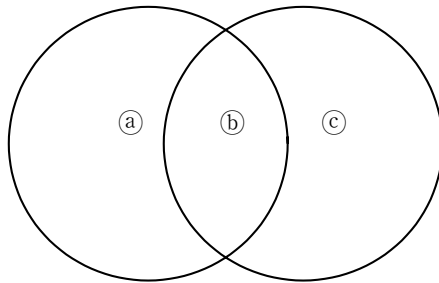
유¹⁸⁾ { 유의: 장민석과도 같이.
유체: 모든 살아있는 것은 필멸한다.

위의 삼지작법에 대해, 인의 삼상은 다음과 같이 만족된다.

- (1) 변시종법성: ‘소크라테스는 살아있다’가 참이다.
- (2) 동품정유성: 필멸하는 것 중에 살아있는 것이 존재한다. (e.g. 장민석)
- (3) 이품변무성: 필멸하지 않는 것 중에는 살아있는 것이 전혀 없다.¹⁹⁾ (모든 불멸하는 것은 살아있지 않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인의 삼상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다.

A: 필멸하는 것 B: 살아있는 것



- (1) 변시종법성: 소크라테스는 B의 원소이다.
 - (2) 동품정유성: ②는 공집합이 아니다.
 - (3) 이품변무성: ③는 공집합이다.
- } A ⊃ B이다.

∴ 소크라테스는 A의 원소이다.

18) 물론 이것은 동유이다.

19) 이것을 귀납적으로 뒷받침하는 유의(이유)의 예는 다음과 같다. “꽃과도 같이.”

인의 술어를 명제함수로 볼 때, 그 명제함수를 참이 되게 하는 대상들의 집합을 B라고 하자. 구구인은 종의 술어의 진리집합을 A라 할 때, 집합 A와 B 사이의 관계를 경우에 따라 분류하고, 각 경우에 그 인이 정인(타당한 인)인지 사인(부당한 인)인지를 밝혀놓은 도식이다. 구구인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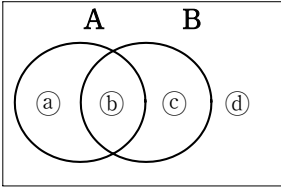
		이 품		
		유	무	구
동 품	유	1구. 동품유 이품유 a: Φ , b: Ψ , c: Ψ , d: Φ	2구. 동품유 이품무 a: Φ , b: Ψ , c: Φ , d: ?	3구. 동품유 이품구 a: Φ , b: Ψ , c: Ψ , d: Ψ
	무	4구. 동품무 이품유 a: ?, b: Φ , c: Ψ , d: Φ	5구. 동품무 이품무 a: ?, b: Φ , c: Φ , d: ?	6구. 동품무 이품구 a: ?, b: Φ , c: Ψ , d: Ψ
	구	7구. 동품구 이품유 a: Ψ , b: Ψ , c: Ψ , d: Φ	8구. 동품구 이품무 a: Ψ , b: Ψ , c: Φ , d: ?	9구. 동품구 이품구 a: Ψ , b: Ψ , c: Ψ , d: Ψ

* Φ 는 공집합, Ψ 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 ?는 알 수 없음(무관함)을 의미한다.

* a, b, c, d는 아래 벤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영역에 해당하는 집합을 의미한다.

20) 김상일,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로 풀어본 원효의 관비량론』, 102p에 제시된 체르바츠키의 표를 바탕으로 진리 집합 포함관계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가미하여 만든 구구인 표이다.

전체집합



* 용어 설명

이품(異品): 종의 술어의 진리집합(=A)의 여집합의 원소²¹⁾

동품(同品): 종의 술어의 진리집합의 원소

유(有): 모든 동품(이품)이 인의 술어의 진리집합(=B)에 속함

무(無): 모든 동품(이품)이 인의 술어의 진리집합에 속하지 않음

구(俱): 어떤 동품(이품)은 인의 술어의 진리집합에 속하지만, 어떤 동품(이품)은 그렇지 않음

종의 술어의 진리집합 즉 A(필멸하는 것의 집합)이, 인의 술어의 진리집합 즉 B(살아있는 것의 집합)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위의 삼지작법은 타당한 논증이 된다. 위의 표에 의하면 1, 3, 4, 6, 7, 9구의 경우엔 $A \supseteq B$ 가 아니며, 5구의 경우엔 전체가 필연적으로 거짓(집합 B가 공집합)이다. 따라서 구구인 중 2구와 8구만이 타당한 인, 곧 정인이 된다.

진나의 설명은 조금 더 복잡하다. 진나는 『인명입정리론』에서 사인의 종류를 네 가지로 구분한다. 인의 삼상 중 제1상인 변시종법성을 어길 경우 그것은 불성인(不成因)이 되고, 제2상인 동품정유성과 제3상인 이품변무성을 모두 어길 경우에는 상위인(相違因)이 되고, 제2상인 동품정유성만 어길 경우에는 불공부정인(不共不定因)이 되고, 제3상인 이품변무성만 어길 경우에는 공부정인(共不定因)이 된다.

21) 김성철은 이품과 동품을 고려할 때, 종의 주어(위의 예에선 ‘소크라테스’)를 배제한다. 사실 이것이 진나의 원전에 충실한 해석이나, 이 경우 체계의 타당성이 깨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선 뒤에서 자세히 논하겠다.

진나는 이러한 사인들과 정인을 구분하기 위해 구구인설을 창안하였다. 각각의 구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김성철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²²⁾

4. 진나 인명학의 원래 버전과 그에 내재한 ‘오류’²³⁾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진나 인명학의 원래 버전은 본고 I-3절에서 설명한 수정된 버전과는 매우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구인 중 제5구인의 불공부정성을 설명하는 진나의 논리를 살펴보자.

『공통되지 않은 것(不共)은 예를 들어 ‘소리는 들리기 때문에 상주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실로 상주함과 무상함이 라는 주제와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또 상주함과 무상함 이외의 (그 어떤)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들린다는 것이 어떤 존재에 속할 것인지 의심스러운 이유이다.』²⁴⁾

여기서 우리는, 동품과 이품에 대한 진나의 정의가 I-3절에서 우리가 내린 정의와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위의 문장에 대한 김성철의 해석을 살펴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중: 소리는 상주한다.

인: 귀에 들리기 때문에.

즉, 진나는 『상주하는 것 중에서든, 무상한 것 중에서든, 소리 이외에 귀에 들리는 것은 없다.』²⁵⁾는 사실을 근거로 위의 예가 제5구인, 다시 말해 불공부정인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진나가 동품과 이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을 방증한다.

22) 김성철, 『원효의 판비량론 기초 연구』, 83~92.

23) 물론 이는 서양 논리학적 사고 방식으로 볼 때 오류라는 뜻이다.

24) 김성철, 『원효의 판비량론 기초 연구』, 439p.

25) 같은 책, 87p (굵은 글씨는 인용자가 강조한 부분).

동품: 종의 주어를 **제외한** 대상들 중 종의 술어를 속성으로 지니는 것.

이품: 종의 주어를 **제외한** 대상들 중 종의 술어를 속성으로 지니지 않는 것.

하지만 이품과 동품을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진나의 삼지작법 체계는 타당성을 잃게 된다. 다음의 삼지작법을 보자. 이해의 편의를 위해 삼단 논법과 대응시켰다.

종: 소리는 무상하다		대전제: 모든 귀에 들리는 것은 무상하다
인: 귀에 들리기 때문에		소전제: 소리는 귀에 들린다
유: 소리와도 같이		결론: 소리는 무상하다

진나에 의하면 위의 비량은 역시 제5구인, 불공부정인의 오류를 범한 셈이 된다. 그러나 위의 비량은 타당하다. 따라서 서양 현대 논리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진나의 논증 체계는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5. 진나 인명학의 성격 규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논리학의 관점에서 진나 인명학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진나 인명학은 삼단 논법과는 다른 특색을 지닌다. 이 두 사실은 서로 무관하지 않으며, 양자 모두 근본적으로 불교의 ‘공’과 ‘연기’ 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우선 진나 인명학의 두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적 법칙이 아닌 일반적 법칙의 사례(유)를 제시한다.
- (2) 종의 주어를 유의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진나 이후 유를 유체와 유의로 구분함으로써 일반적 법칙 또

한 삼지작법 내로 들어오게 되지만, 여전히 일반적 법칙의 사례(유의)를 더 중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로 인해 진나의 논증식은 연역 추론과 귀납추론²⁶⁾을 섞어놓은 듯한 기묘한 양상을 보인다.

사실, (2)의 특징도 (1)의 특징에 수반하는 것이다. 진나 인명학은 논증 시 언제나 실례를 하나 이상 제시하길 요구하는데, 만약 종의 주어를 실례로서 제시한다면 논증 전체가 동어반복, 즉 순환 논증의 형태를 띠게 된다. 즉,

종: 소리는 무상하다.

인: 귀에 들리기 때문에.

유: 소리와도 같이 (모든 귀에 들리는 것, 즉 소리는 무상하다)

라는 비량은 결국 “소리는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하다”라는 이야기가 된다. 진나는 이러한 순환 논증을 타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I-4절에서 논한 진나 인명학의 ‘오류’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²⁷⁾ 물론 이러한 오류를 방지할 경우 반대 급부로서 ‘인의 삼상’ 체계의 건전성과 완전성이 깨진다.²⁸⁾ 이는 모두 근본적으로 특징 (1)에 기인하는 문제다.

서양 형식논리학에서는 위와 같은 논증이 어떻게 취급되는가? 위의 삼지작법을 그에 대응하는 삼단논법으로 바꾸어서 분석해 보자.

대전제: 모든 들리는 것, 즉 소리는 무상하다.

소전제: 소리는 들리는 것이다.

26) 물론 삼지작법에서는 유의를 딱 하나만 제시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건전한 귀납추론이라 보긴 힘들다.

27) 하지만 진나의 후학인 법칭에 이르러서는 ‘자비량’을 도입하여 종의 주어도 유의로서 인정하게 된다. 실례가 따로 없어도 종의 주어가 실례로서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를 ‘내주연론’이라 한다. 나아가 아예 불공부정을 오류가 아닌 것으로까지 여기게 된다. (김상일,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로 풀어본 원효의 관비량론』, 114~115p 참고)

28)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어떤 비량이 인의 삼상을 만족시킨다 하더라도 율음이 보장되진 않는다. 때문에 진나 인명학은 세간상위, 상위결정의 부정인 등 논증의 건전성과 관련된 오류들을 양산해야 했다.

결론: 따라서 소리는 무상하다.

이것은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서양 형식논리학에서 동어반복은 타당한 논증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타당한 논증의 결론이 언제나 참인 것은 아니다. 그 결론은 전제가 참인 경우에만 참이 된다. 어떤 삼단논법의 타당성은 전제의 참, 거짓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삼단논법은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내지 못한다.

반면 진나의 삼지작법은 체계의 완전성과 건전성을 희생한 대신, 생산성을 얻게 되었다. 즉 진나의 인명학에서 삼지작법에 의해 주장되는 종은 그 근거들(인과 유의)만으로 환원되지 않는 새로운 결론이다. 예컨대 바로 위에 언급한 삼지작법에 대해 동품정유성 검토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무상한 것 중 귀에 들리는 것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진나는 ‘있다. 소리다.’라고 대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검토의 대상이 되는 비량 자체가 소리의 속성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진나의 삼지작법 체계는 귀납추론을 통한 잠정적 법칙 수립과 그 법칙에 근거한 연역추론을 통한 결론의 도출을 동시에 수행하며, 이를 통해 언제나 참임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함의를 지닌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나는 왜 법칙(유체)보다 실례(유의)를 중시한 것일까? 이는 불교가 주창하는 공 사상과 연기 사상의 영향이라 생각한다. 공 사상에 따르면 고정된 법칙이나 대전제는 없다. 다만 연기설이 말하듯 각각의 존재자들이 인연을 통해 다른 모든 존재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 법칙이란 어디까지나 방편(方便)이며, 개별 사태에 대한 언급이 보다 중시되는 것이다.

요컨대 진나 인명학의 논리 체계는, 논증의 타당성만을 문제시하는 서양의 형식 논리학과는 달리, 존재론과 인식론까지를 포함하는 거대한 사유체계와의 메타 논리학적 정합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Ⅱ. 현장의 유식비량 분석

1. 현장의 기획

현장은 인도 유학 시절 ‘만법이 유식’임을 증명하는 ‘유식비량’의 논증식을 고안해 발표하였는데, 그 논리가 교묘하여 아무도 감히 이를 비판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현장이 고안하였다는 유식비량은 다음과 같다.

「제1량

종: 승의에 의거할 때, 양측 모두 인정하는 색은 안식을 벗어나 있지 않다.

인: 우리측에서 인정하는 초삼(18계 중 첫 3계, 즉 안근, 색경, 안식)에 포함되면서 안근(안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 마치 안식과 같이

이 논증식에서 현장(玄奘)은 색경(色境), 즉 소승 측에서 외계에 실재하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형상(色)이 안식(眼識)을 벗어난 것이 아님을 논증하려 했는데, 그는 원래 다음과 같은 논증식을 차례차례 작성하려 했다고 한다.

제2량

종: 승의에 의거할 때, 양측 모두 인정하는 성은 이식을 벗어나 있지 않다.

인: 우리측에서 인정하는 이삼(이근, 성경, 이식)에 포함되면서 이근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 마치 이식과 같이

…」²⁹⁾

29) 김성철, 『원효의 판비량론 기초 연구』, 113~114p.

현장은 이런 식으로 1량~6량까지 안, 이, 비, 설, 신, 의 모두에 대한 비량을 고안함으로써, 색, 성, 향, 미, 촉, 법 모두가 각각의 식에서 벗어나 있지 않음을 증명하려 했던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만법 유식이 입증되는 것이다. 1량~6량의 논증구조는 모두 동일하므로, 1량에 대해서만 올바름이 증명된다면 만법유식이 증명되는 셈이다. 참으로 기발하고도 야심 찬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김성철은 1량을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³⁰⁾

『불교의 가르침에는 승의제와 세속제가 있는데, 세속제는 일반적인 세속 사람들의 상식에 의거한 가르침이며, 승의제는 세간사람들의 상식을 초월한 진정한 가르침이다. 그런데 그런 승의적 가르침에 의거할 경우 대승과 소승 양측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시각대상(색)들은 시각인식(안식)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즉, 대승유식에서 말하듯이 안식이 변화하여 시각대상처럼 착각되어 나타난 것일 뿐이다(주장: [宗]). 왜냐하면, 대승 측에서 말하는 십팔계 가운데 처음 세 가지인 안근(안계), 색경(색계), 안식(안식계)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안근³¹⁾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이유: 因). 이런 사실은 안식을 벗어난 것이 아닌 안식이, 십팔계 가운데 처음 세 가지인 안근, 색경, 안식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안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실례를 통해 알 수 있다.(실례: 喩).』

상당히 기발한 궤변이다.³²⁾ 우선 이 비량이 ‘인의 삼상’을 만족함을 보이자.

- (1) 변시종법성: 색은 초삼에 포함되면서 안근에는 포함되지 않는가? → 그렇다.
- (2) 동품정유성: 안식을 벗어나 있지 않은 것 중, 초삼에 포함되면서 안근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는가? → 있다. 안식.

30) 같은 책, 115p.

31) 안근이란 시각각각 기관 즉 눈을 말한다.

32) 물론 진나 논리학 체계 내에선 상당히 강력한 논변이다.

- (3) 이품변무성: 안식을 벗어나 있는 것 중, 초삼에 포함되면서 안근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는가? → 전혀 없다. (∵ 초삼이란 안근, 색경, 안식을 말하는데, 색경은 논의의 대상(宗의 주어)이므로 후보에서 제외되고³³⁾, 안식은 안식을 벗어나 있지 않으므로 제외되고, 안근은 ‘안근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진나 인명학에서는 인의 삼상을 만족함이 곧 논증식의 올바름을 함축하진 않는다. 때문에 현장은 유식비량에 대한 적대자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많은 장치들을 준비해두었다. 현장의 제자인 규기의 설명을 통해 그것들을 살펴보자.

2. 유식비량의 치밀함에 대한 규기의 설명³⁴⁾

(1) ‘승의에 의거할 때’라는 단서를 단 이유

이는 세간상위의 오류를 피하기 위함이다. 즉, 승의에 의거한다는 단서가 붙어있으므로 주장의 내용이 세간의 상식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할 수 없게 된다.

(A) ‘양측 모두 인정하는’이라는 단서를 단 이유

주장 명제의 주어진 ‘색’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소별불극성의 오류와 자교상위의 오류를 피하기 위함이다. 즉, 소송과 대승 모두가 인정하는 색 개념을 종의 주어로 삼음으로써, 종의 주어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상이라는 비판(소별불극성)이나 자기 교³⁵⁾의 교

33) 사실 마법이 일어나는 장소는 바로 여기다. 종의 주어를 동품/이품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인의 삼상의 건전성과 완전성이 훼손된 것이다. 허나 이것은 진나 논리학의 규칙이므로 현장의 논법 자체는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인의 삼상을 만족하는 엉터리 논변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성은 셋별이 아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34) 같은 책, 116~143p 참조.

35) 여기서의 대승.

리에 위배된다는 비판(자교상위)이 불가능해진다.

(3) ‘초삼에 포함되면서’라는 상황을 설정한 이유

부정인의 오류를 피하기 위함이다. 만약 위의 어구를 제거하면 유식비량은 다음의 꼴이 된다.

종: 승의에 의거할 때, 양측 모두 인정하는 색은 안식을 벗어나 있지 않다.

인: 안근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 마치 안식과 같이

이 경우 이품변무성이 깨진다.

* 안식을 벗어나 있는 것 중 안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는가?

→ 있다. 18계 가운데 초삼을 제외한 15계

(4) ‘안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를 인에 기술한 이유³⁶⁾

i) 부정인을 피하기 위함: (3)과 비슷한 논리에 의해 이품변무성이 깨지는 것을 막는다.

ii) 법자상상위를 피하기 위함: ‘안식을 벗어나지 않은 것’의 의미를 ‘안식 이외의 것 중 안식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위에 언급한 ‘안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라는 구절을 인에 넣지 않으면 동품정유성과 이품변무성이 모두 깨진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예의 ‘안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를 제거한 유식비량은 다음과 같다.

종: 승의에 의거할 때, 양측 모두 인정하는 색은 안식을 벗어나 있지 않다.

인: 초삼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 마치 안식과 같이

* 동품정유성: ‘안식 이외의 것 중 안식을 벗어나지 않은 것’ 중에

36)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나 여기서는 김성철의 해석을 따랐다.

‘초삼에 포함되는 것’이 있는가? → 없다.

* 이품변무성: ‘안식 이외의 것 중 안식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 아닌 것’ 중에 ‘초삼에 포함되는 것’이 있는가? → 있다. 안근.

iii) 상위결정의 오류를 피하기 위함. 대승논사의 입장에서는 (4)-ii)에 언급된 유식비량도 타당한 논증식이 된다. 대승논사들은 ‘안근은 안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설하기 때문이다. 즉 (4)-ii)의 유식비량은 동품정유성과 이품변무성을 만족한다.

* 동품정유성: ‘안식 이외의 것 중 안식을 벗어나지 않는 것’ 중에 ‘초삼에 포함되는 것’이 있는가? → 있다. 안근

* 이품변무성: ‘안식 이외의 것 중 안식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 아닌 것’ 중에 ‘초삼에 포함되는 것’이 있는가? → 없다.

또한 다음의 논증식이 규기의 입장에서 성립한다.

종: 승의에 의거할 때, 양측 모두 인정하는 색은 안식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인: 초삼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 마치 안근과 같이.

요컨대 위의 인은 ‘인의 삼상’을 만족하면서도 서로 모순되는 결론을 도출한다. 따라서 상위결정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5) 인에 ‘우리측에서 인정하는’이라는 단서를 단 이유

유법차별상위인을 피하기 위함이다. 소송은 ‘안식을 벗어나 있지 않은 색’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위의 단서를 제거할 경우 유식비량은 그 종의 주어(유법)의 차별이 상반된 비량 역시 타당³⁷⁾하게 되어, 유법차별상위인의 오류가 발생한다.

37) 이품변무성이 아래의 논증식에 대해서도 성립되기 때문이다.

종: 승의에 의거할 때, 양측 모두 인정하는 색은 ‘안식을 벗어나 있지 않은 색’이 아니다.

인: 초삼에 포함되면서 안근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 마치 안식과 같이.

Ⅲ. 현장의 유식비량에 대한 원효의 비판

1. 상위결정의 부정인

원효는 Ⅲ-2절에서 소개할 소위 ‘상위결정의 논증식’을 고안하여 현장의 유식비량을 상위결정의 부정인이라는 오류에 빠지게 만듦으로써 그것의 타당성을 반박하는 전략을 취한다. ‘상위결정의 논증식’을 살펴보기에 앞서 ‘상위결정의 부정인’이란 무엇인지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본고 I-5절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비량이 인의 삼상을 만족시킨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타당함이 보장되진 않는다. 때문에 진나 인명학은 논증의 건전성과 관련된 오류들을 양산해야 했다. 그 중에서도 부정인의 오류란 잘못된 인(因)의 오류 중 불확정적 인의 오류를 말한다. 상카라스와민은 『인명입정리론(니야야쁘라웨사까)』에서 부정인에는 여섯 가지가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현장의 한역과 김성철의 국역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자.

『不定有六 一 共 二 不共 三 同品一分轉異品遍轉 四 異品一分轉同品遍轉 五 俱品一分轉 六 相違決定』

불확정적인 것은 여섯 가지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① 공통된 것과, ② 공통되지 않은 것과, ③ 동질적 주체의 일부분에 해당되고 이질적 주체의 전체에 해당되는 것과, ④ 이질적 주체의 일부분에 해당되고 동질적 주체의 전체에 해당되는 것과, ⑤ 양측의 주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과, ⑥ 모순이 확정적인 것이다.³⁸⁾

이어 상카라스와민은 각각의 부정인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모순이 확정적인 부정인 즉 상위결정의 부정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38) 상카라스와민 저, 김성철 역, 『인명입정리론(因明入正理論)』, 『승가』.

『相違決定者 如立宗言 聲是無常 所作性故 譬如瓶等 有立聲常 所聞性故 譬如 聲性 此二皆是 猶豫因故 俱名不定』

⑥ 모순이 확정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소리는 무상하다.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물단지 등과 같이. 소리는 상주한다. 들리기 때문에. 소리성과 같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양자 모두 의심스러운 이유를 갖기 때문에, 일어난 것(samuditau)은 이렇게(etau) 두 가지임(dvau)에도(api) 불확정적인 것(anaikāntika)은 하나(eka)뿐(eva)이다.³⁹⁾

즉 상위결정의 부정인이란, 인의 삼상을 만족시키는 두 비량이 서로 모순된 결론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진나는 서로 다른 인에 근거하여 (진나 인명학 체계 내에서) 타당하게 전개된 두 비량이 모순된 결론을 내놓은 것은, 그 비량들이 잘못된 인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 인이 잘못된 이유는 불확정적이기 때문이다.

서양 형식논리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두 논증 중 하나의 대전제가 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인용구에 제시된 예에서는 “모든 만들어진 것은 무상하다”와 “모든 들리는 것은 상주한다”의 두 대전제가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모순된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형식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설명이지만 실제 논쟁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설명은 대전제에 대한 귀납적인 설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진나의 인명학의 삼지작법은 I-5절에서 상론한 바와 같이 귀납법과 연역법을 섞어놓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진나가 말하는 상위결정의 부정인이란 단순히 인들이 형식적으로 모순된다는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인들이 우리의 경험에 의해 비슷한 정도로 귀납적으로 지지된다는 사실까지를 함축한다.

2. 상위결정의 논증식

원효는 다음과 같은 논증식이 현장의 유식비량을 상위결정의 오류

39) 같은 논문.

에 빠지게 만든다고 말한다.⁴⁰⁾

종: 승의에 의거할 때, 양측 모두 인정하는 색은 반드시 안식에서 벗어난 것이다.

인: 우리측에서 인정하는 초삼에 포함되면서 안식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 마치 안근과 같이

{안근, 색경, 안식}의 초삼 중, 안근과 안식의 대칭성을 이용한 절묘한 반격이다. 인의 삼상은 다음과 같이 성립된다. ⁴¹⁾

- (1) 변시중법성: 색은 초삼에 포함되면서 안식에는 포함되지 않는가? → 그렇다.
- (2) 동품정유성: 안식을 벗어난 것 중, 초삼에 포함되면서 안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는가? → 있다. 안근.
- (3) 이품변무성: 안식을 벗어나 있지 않은 것 중, 초삼에 포함되면서 안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는가? → 전혀 없다. (: 초삼 중, 색경은 논의의 대상이므로 제외, 안식은 안식에 포함되므로 제외, 안근은 안식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IV. 원효의 상위결정의 논증식에 대한 규기의 비판

1. 규기의 비판

원효의 상위결정의 논증식에 대한 규기의 비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⁴²⁾

40) 김성철, 『원효의 판비량론 기초 연구』, 151~179p 참조.

41) 본고 II-1에 제시된 현장의 유식비량 정당화 논리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원효의 논증식은 소송의 입장에서 구성한 것이다.

(1) 원효의 논증식은 자비량⁴³⁾인 반면, 현장의 유식비량은 공비량(혹은 타비량)이다.

→ 현장의 논증식에서 인에 포함된 ‘우리측에서 인정하는’ 즉 ‘자허(自許)’는 단지 유법차별상위의 오류를 막기 위해 ‘초삼’을 수식하는 말일 뿐이다. 반면 원효의 논증식에서 이를 수식하는 ‘자허’는 문장 전체를 한정하는 말이다. 따라서 원효의 논증식만이 자비량이다. (∵ 원효의 인이 성립하려면, ‘색은 안식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참이어야 한다. 그러나 대승에서는 모든 색이 안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므로, 원효의 인이 성립하려면 ‘자허’가 문장(因) 전체를 수식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상위결정의 논증식은 수일불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 본질적으로 (1)과 동일한 비판이다. 즉 상위결정의 논증식의 인은 대승 측 관점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3) 상위결정의 논증식 중의 유는 소립법불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 ‘안근은 안식에서 벗어나 있다’가 참이 되어야 원효의 유는 성립한다. 허나 대승의 견지에 따르면 안근은 안식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규기의 비판에 대한 김성철의 재반론

(1) 유(喩)가 소립법불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하여.

→ 원효는 『판비량론』에서, 오근실호용중⁴⁴⁾을 이용한 반론을 논파

42) 같은 책, 179~183p 참조.

43) 비량은 그 전제의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① 자비량(自比量): 이는 스스로 지키는 논법으로서 자신이 인정하는 전제로부터 구성한다. ② 타비량(他比量): 이는 공격의 논법으로서 논쟁의 상대방이 인정하는 전제로부터 구성한다. ③ 공비량(共比量): 이는 함께 논쟁하는 논법으로서 자신과 상대방이 인정하는 전제로부터 구성한다.

44) 부처가 되면 눈으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주장. 즉 ‘대승에서 말하는 안근은 안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함축한다.

하는 수정된 비량을 고안했다.

종: 승의에 의거할 때, 양측 모두 인정하는 색은 양측 모두 인정하는 안식에서 벗어나 있다.

인: 우리측에서 인정하는 초삼에 포함되면서 안식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 마치 안근과 같이⁴⁵⁾

- * 김성철의 이 재반론은 타당하다. 종의 술어에 ‘양측 모두 인정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임으로써 유는 성립하게 된다. 원효의 논증식이 자비량이라는 비판과 수일불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하여

→ 김성철은 규기가 ‘벗어남(離)’과 ‘포함되지 않음(不攝)’의 의미를 같은 것으로 착각한 반면, 원효는 그 둘을 구분하였고,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원효의 논증식은 자비량도 아니요, 또한 수일불성의 오류도 범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 상위결정의 논증식을 다시 보자.

종: 승의에 의거할 때, 양측 모두 인정하는 색은 반드시 안식에서 벗어난 것이다.

인: 우리측에서 인정하는 초삼에 포함되면서 안식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 마치 안근과 같이.

포함되지 않음과 벗어남의 차이를 김성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포함되지 않음(不攝): 별개의 항목임. 집합에 속하지 않음. 외재적 관계 하에서의 소속과 관련.

벗어남(離): 영향을 받지 않음. 종속되지 않음. 내재적 관계 하에서의 소속과 관련.

그러므로 ‘색은 안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승 측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현장의 유식비량도 이러한 구분 하에서⁴⁶⁾ 고안되었다고

45) 같은 책, 157p.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장의 유식비량과 그 구조가 동일한 원효의 유식비량 역시 대승의 견해와 상충되지 않는다.

* 김성철의 이 재반론은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현장의 유식비량 또한 ‘벗어나지 않음’과 ‘포함됨’을 구분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V. 원효의 ‘유식비량 비판 논리’의 타당성

1. 현장의 유식비량에서도 ‘벗어나지 않음’과 ‘포함됨’이 구분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보완

현장 역시 ‘벗어나지 않음’과 ‘포함됨’을 구분해서 사용했다는 김성철의 주장은 옳다. 하지만 김성철은 한자어의 쓰임새만을 근거로 그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때문에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물론 반드시 현장의 유식비량에서도 그러한 구분이 필요했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원효가 그러한 구분을 토대로 타당한 ‘상위결정의 논증식’을 구성할 수 있었음을 보이기만 해도 현장의 유식비량은 오류에 빠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의 유식비량이 원효의 상위결정의 논증식과 동일한 논법을 취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면, 현장의 논리와 원효의 논리는 완전히 대칭적인 것이 되므로 더 이상 상위결정의 논증식을 비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장의 유식비량 또한 ‘벗어나지 않음’과 ‘포함됨’을 구분했음을 증명하는 것은 가치 있는 작업이다.

여기서 우리가 취할 전략은 귀류법이다. 즉, 현장이 종의 ‘벗어나지 않음(不離)’과 인의 ‘포함됨(攝)’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벗어나지 않음’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규기가 원효에게 가했던 것과 동일한 구조의 비판을 통해 현장의 유식비량이 무너짐을 보여줄 것

46) 현장과 원효의 비량은 그 결론이 정반대이므로, 현장의 유식비량의 경우에는 ‘벗어나지 않음’과 ‘포함됨’의 구분이 된다.

이다.

현장의 유식비량을 위의 가정에 맞게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중: 승의에 의거할 때, 양측 모두 인정하는 색은 안식을 벗어나 있지 않다.

인: 우리측에서 인정하는 초삼에 포함되면서 안근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유: 마치 안식과 같이

위의 인은 ‘색은 안근으로부터 벗어나 있다’가 참일 때만 성립한다. 그런데 ‘색은 안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는 교과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⁴⁷⁾ 현장의 유식비량 역시 수일불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2. 결론: 현장의 마술에 숨겨진 트릭

사실 현장의 유식비량은 내용에 대한 반론을 통해서만 반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실상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현장의 유식비량은, 사실상 동어반복에 불과한 전제들로부터, 진나 인명학의 오류를 이용하여 엉터리 결론을 도출한 잘못된 논증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현장의 유식비량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중: 승의에 의거할 때, 양측 모두 인정하는 색은 안식을 벗어나 있지 않다.

인: 우리측에서 인정하는 초삼에 포함되면서 안근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 마치 안식과 같이.

유식비량의 유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편의상 한정어구는 모두 생략)

47) 그런 교과가 없다면 지금 당장 하나 만들면 된다.

유체: 초삼에 포함되면서 안근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안식을 벗어나 있지 않다.

그런데 초삼은 {안근, 색경, 안식}이고, 진나 인명학의 원칙에 따라 종의 주어인 색은 유의에서 제외되므로, 유체를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유체': {안근, 색경, 안식}에 포함되는 것은 안식을 벗어나 있지 않다.

≡ 안식은 안식을 벗어나 있지 않다. (이것은 형이상학적 필연성을 지닌 명제다)

반면, 인과 종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인: 색(경)은 {안근, 색경, 안식}에 포함된다.

≡ 색경은 색경 또는 안식이다. (이것은 논리적 필연성을 지닌 명제다)

종: 색은 안식을 벗어나 있지 않다. (이것은 현장의 교과가 주장하고 싶은 명제다)

따라서 현장이 제시한 전제들은 사실상 동어반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어반복이 아닌 유의미한 결론이 나왔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트릭의 핵심은 색경을 실례(유의)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진나 인명학의 규칙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 규칙을 이용한 덕분에 '{안근, 색경, 안식} = {안근, 색경, 안식}'라는 잘못된 공식이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진나 인명학의 특징 (2)⁴⁸⁾는 종의 술어의 진리집합의 원소가 단 3개인 경우 유식비량과 같은 궤변을 만들어 낸다.⁴⁹⁾

현장은 이러한 진나 인명학의 논증체계 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교묘한 논증식을 고안했다. 실로 훌륭한 재능이다. 하지만 논리의 대칭성

48) 본고 1-5 참조.

49) 종의 술어의 진리집합의 원소가 하나인 경우에는 불공부정인, 즉 제5구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을 이용하여 현장의 궤변을 동일한 구조의 궤변으로 이율배반을 이끌어낸 원효는 실로 불세출의 천재라 할 만하다. 결국 원효는 현장의 유식비량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부록. 본고에 언급된 오류들에 대한 설명

1. 상위결정의 부정인: 인의 삼상을 만족시키는 두 비량이 서로 모순된 결론을 주장하는 경우. 본고 III-1절의 설명 참조.
2. 불공부정인: 구구인 중 제5구인. 동품과 이품이 모두 존재하지 않아 동품정유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세간상위: 세간의 가르침 즉 상식에 위배되는 주장을 펴는 경우.
4. 소별불극성: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 경우. 즉 종의 주어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상인 경우.
5. 자교상위: 전승량에 모순되는 주장인 경우. 즉 자신의 교과의 교리에 위배되는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
6. 법자상상위인: 구구인 중 제4구와 제6구의 상위인. 즉 동품정유성과 이품변무성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7. 수일불성: 대론하는 양측 가운데 어느 한 측에서 인정하지 않는 인을 사용한 경우.
8. 소립법불성: 유의가 종의 술어를 속성으로 가지지 않는 경우.
9. 유법차별상위인: 종의 주어에 담긴 입론자의 독특한 인식(차별)으로 인해 상위인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경우. 즉 어떤 비량이 전제하고 있는 종의 주어(유법)의 차별(속성, 특질)이 상반된 비량 역시 타당한 것이 되어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

참고문헌

- 김성철, 『원효의 판비량론 기초 연구』, 지식산업사, 2003.
- 김상일,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로 풀어본 원효의 판비량론』, 지식산업사, 2003.
- 벤슨 메이츠 저, 김영정, 선우환 역, 『기호논리학』, 문예출판사, 1995.
- 김성철, 『원효 저 <판비량론>의 산일부 연구1』, 『한국불교학』, 2002.
- 김성철, 『판비량론에서 보이는 원효와 규기의 논쟁』, 『불교학결집대회』, 2004.
- 김성철, 『원효의 논리사상』, 『보조사상 26집』, 2006.
- 상까라스와민 저, 김성철 역, 『인명입정리론(因明入正理論)』, 『승가』, 2000.